



금융감독원

보도자료

금융투자협회
Korea Financial Investment Association

보도

2025.12.18.(목) 조간

배포

2025.12.17.(수)

담당부서	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	책임자	국장	임권순	(02-3145-7580)
		담당자	팀장	김세훈	(02-3145-7587)
	금융투자협회 증권·선물본부	책임자	본부장	천성대	(02-2003-9013)
		담당자	부장	진양규	(02-2003-9100)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	책임자	본부장	정형규	(02-2003-9014)
		담당자	부장	김효실	(02-2003-9420)

**IMA 출시를 앞두고 설명서·약관 등 판매 서류에 대한
투자자 보호장치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**

주요 내용 (요약)

◆ **(개요)** 금감원은 IMA 업무가 가능한 종투사(자기자본 8조원)가 지정(11.19.)됨에 따라 신속하게 IMA 출시 지원을 위한 T/F*를 구성·운영(11.20.~)해 왔습니다.

* 참여기관 : 금감원(자본시장감독국), 금투협회(증권1부, 소비자보호부), 종투사(한투, 미래)

◆ **(주요 논의결과)** T/F 논의를 통해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의 설명서·약관 등의 내용·형식을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대폭 강화하였습니다.

① **(상품설명서)** 상품설명서에 IMA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, 금융회사가 아닌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

② **(약관)** 종투사가 IMA 운용 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 부실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약관에 명시

③ **(자산운용보고서)**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,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정보 등을 제공

④ **(광고)** 원금지급 의무, 실적배당형 IMA의 주요 특성을 반영한 'IMA 광고 가이드라인'을 마련하여 과장 광고 등을 사전 예방

◆ **(향후 계획)** 금감원은 IMA가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입니다.

○ 또한, IMA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인해 불완전 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.

※ 각 종투사는 위 논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IMA 출시를 준비중이며, 금년 내 각 사 IMA 1호 상품을 순차적으로 출시할 계획

I. 개요

□ IMA*는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합금융투자사업자(이하 '종투사')로 지정된 초대형 증권사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 상품

* Investment Management Account(종합투자계좌)

○ 금융위원회는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*하고

* '25.11.5. 금융위 의결 → '25.11.18. 국무회의 의결 → '25.11.25. 시행

○ IMA 업무가 가능하도록 한국투자증권, 미래에셋증권 2개사를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종투사로 지정('25.11.19. 금융위 의결)

□ 이에 금감원은 금투협회·업계와 함께 IMA 상품 출시 지원 및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T/F를 신속하게 구성*('25.11.20.)하여

* 금감원(자본시장감독국), 금투협회(증권1부, 소비자보호부), 종투사(한투, 미래)

○ 설명서, 약관, 운용보고서 등 IMA 판매 서류에 IMA의 주요 특징 및 핵심 위험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였음

II. 주요 내용

◆ 투자자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최초 출시되는 IMA 상품 관련 판매 서류의 내용·형식 등을 투자자 눈높이에 맞춰 강화

【주요 내용(요약)】

구 분	주요 내용
① 상품설명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핵심 위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, IMA 특성을 고려한 위험등급 산정Worst Case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포함하고, 과세기준(배당소득 예정) 기재
② IMA 약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종투사가 IMA 운용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도록 의무화부실 발생 등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
③ 자산운용 보고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자산운용보고서를 투자자에게 분기별 1회 교부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등 구체적인 운용 현황 제공
④ 광 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IMA가 종투사 신용위험 등으로 원금손실 가능성이 있는 상품임을 명시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·수수료 등 명확히 표기

1

IMA 상품 특성을 반영한 상품설명서 마련

□ 상품설명서에 IMA 상품의 핵심 투자위험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기술하고, 투자자 입장에서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사용

- **(투자위험)** 종투사 파산 등에 따른 원금 손실위험, 중도해지 가능 여부 등 핵심 투자위험을 명확하게 기재

- **(위험등급)** IMA의 만기, 운용자산의 위험도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험등급* 산정

* 초기 IMA 상품의 위험등급은 만기가 길고,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발행어음(5등급, 낮은 위험)에 비해 높은 4등급(보통 위험)으로 출시 예정

- **(시나리오 분석)** IMA 운용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경우(Worst Case*) 등 시나리오 분석 결과를 기재

* 예) 종투사 파산 등으로 원금 지급의무가 이행되지 못하는 상황

- **(과세방식)** 기재부 - 금융위 간 협의내용을 토대로 IMA 투자수익은 “배당소득”으로 분류될 예정임을 기재

<참고 : IMA 투자수익 과세방식 논의 경과>

※ IMA 투자수익은 “배당소득”으로 분류하는 것으로 기재부-금융위 간 협의 완료

⇒ 법령 개정 내용은 2025년 세제개편안 관련 후속 시행령 개정안 보도자료, 입법예고 등을 통해 '25.12월말 전후 최종 발표 예정

2

약관을 통해 종투사의 관리 · 감시 책임 부과

□ 약관에 종투사가 IMA 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 등을 확인하고, 중요사항 발생 시 투자자에게 즉시 안내하도록 명시

- **(관리·감시책임)** IMA 운용내역의 설명서 부합 여부, IMA 리스크 관리의 적정성 등에 대해 종투사가 의무적으로 확인*

* 각 사는 리스크관리부서 등 운용부서와 독립된 제3의 부서를 통해 관리·감시 의무 이행 예정

- **(중요사항 즉시 안내)** 부실자산 발생, 만기상환 불능 등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자에게 안내하도록 의무화

3

IMA 운용 내역에 대한 투명성 제고

- IMA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투자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, 공모펀드에 준하여 주요 투자종목 현황 등 제공
 - **(투자자 안내 강화)** 중도해지가 불가능한 IMA 상품의 경우에도 투자자에게 자산운용보고서를 분기별 1회 교부
 - * 현행 법령은 자산운용보고서 교부 횟수를 중도해지 가능 여부에 따라 **연 1회 이상**(중도해지 불가능), **분기별 1회 이상**(중도해지 가능)으로 각각 구분
 - **(주요 투자종목 안내)** 공모펀드 운용보고서 수준으로 주요 투자종목 명세, 수익률 현황 등 세부현황을 투자자에게 안내
 - ※ 각 종투사는 IMA 상품별 **일일 기준가격**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투자자에게 제공할 예정

4

IMA 광고 가이드라인 마련

- 원금지급 의무, 실적배당형 등 IMA 주요 특성이 반영된 IMA 광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과장 광고 등을 사전적으로 예방
 - **(손실발생 가능성)** 만기 시 종투사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함에도 원금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투자성 상품임을 명시
 - **(보수·수수료)** 성과보수를 포함한 보수·수수료를 명확히 표기해야 하며,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예상(기대)수익률은 표기가 불가

III. 향후 계획

- 앞으로도 금감원은 금투협회 등과 함께 IMA가 종투사의 기업금융 및 모험자본 공급 확대를 위한 핵심적인 자금조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할 계획
 - 또한, 출시 이후 무분별하고 과도한 영업 경쟁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조치할 예정

☞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(<http://www.fss.or.kr>)

가. IMA(종합투자계좌) 개요

- IMA는 종투사(자기자본 8조원 이상)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자금을 통합·운용하고 실적에 따라 수익을 지급하는 계좌
 - 투자자 모집자금을 기업금융 관련 자산 등에 주로 운용(모집 자금의 70% 이상)하여 발생한 수익은 고객에게 지급(실적배당)
 - 한편, 투자자가 IMA를 만기까지 보유한 경우, 운용 결과 원금 이하 손실이 발생하더라도 종투사가 투자 원금을 지급

나. 상품구조

구 분	내 용
원금지급	종투사(자기자본 8조원 이상)가 원금을 지급하는 상품(만기 시)
가입채널	온/오프라인
대상고객	개인/법인 가능
만기	자유롭게 설정(단, 만기 1년 이상이 70% 이상)
중도해지	폐쇄형(중도해지 불가).개방형, 단위형.추가형 등 자유롭게 설계 가능
보수	기본보수(판매·운용·일반사무관리보수 등) 및 성과보수(기준수익률 초과 시) 수취
운용자산	기업대출, 인수금융, 회사채·전자단기사채 등

다. IMA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

- IMA는 대부분 **만기가 1년 이상**으로 설정되는 **중장기형 투자성 상품**입니다
- **폐쇄형**으로 설정된 IMA 상품의 경우 **중도해지가 불가능**합니다.
- IMA는 고객의 요청에 따라 중도에 해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판매사(종투사)가 원금지급 의무를 부담하나, 판매사의 신용위험(부도, 파산 등)에 따라 **투자 원금 전부 또는 일부의 손실**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
- IMA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서 **원칙적으로 예상(기대)수익률 제시가 불가능**합니다.
- IMA는 운용실적에 따른 성과가 투자자에 귀속되는 실적 배당상품으로서 운용실적에 따라 기본보수 외에 **성과보수가 부과**될 수 있습니다.
- IMA는 **예금자보호법**에 따라 **보호되지 않습니다.**